

4.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부동산에 관한 대표적 권리에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이 있는데 매매·저당권설정계약등 법률행위로 인한 권리의 득실변경의 경우에 등기를 하지아니하면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